

대법원 2015. 8. 27 선고 2015다28883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, 피상고인 A

피고, 상고인 B

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. 4. 22. 선고 2014나5920 판결

판결선고 2015. 8. 27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상고할 수 있는데,

상고이유의 주장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이인복대법관 고영한주심 대법관 김소영